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633
----------	------

2021년 9월 10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8월 11일 김경영 의원 외 10명
2. 회부일자 : 2021년 8월 18일
3. 상정일자 :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 9월 7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김경영 의원)

1. 제안이유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일부개정(2017.3.21.)되어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의에 “혼인”이 포함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연도별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행계획에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등의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의를 수정함(안 제2조제1호)
- 연도별 시행계획에 시행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상위법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함과 동시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과 구성을 구체화하고 평과결과를 차년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서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되었음.

2 주요사항 검토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제1호)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는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고 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주요사유로 혼인을 규정하고 있음(2017.3.21.). 개정안은 법의 정의규정을 반영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의에 혼인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조례안의 정의규정은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을 존중하여 같은 용어는 가능한 한 정의가 같도록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¹⁾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1)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법제처, 2013; 법제처 공문자료 재인용.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p> <p>2. ~ 4.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u>혼인</u>· <u>임신</u>----- ----- ----- -----.</p> <p>2. ~ 4. (현행과 같음)</p>

□ 시행계획 구체화 및 평가반영 신설(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 현행 조례는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안 제4조제2항은 시행계획에 ▲경력단절여성등의 현황과 전망,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주요 시책,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주요시책, ▲그 밖에 시장이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시행계획을 구체화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안 제4조제3항은 시장이 시행계획 시행결과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목적달성과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짐.

성은 149만 7천명, 비취업여성은 57만 3천명, 경력단절여성은 23만 1천명임.

경력단절여성 규모 현황(전국과 서울)

(단위 : 천명, %)

기간	15~54세 기혼여성(A)		비취업여성(B)				경력단절여성(C)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계	비율 (B/A)	계	비율 (B/A)	계	비율 (C/A)	계	비율 (C/A)
2016	9,376	1,750	3,727	39.8	716	40.9	1,924	20.5	348	19.9
2017	9,159	1,684	3,574	39.0	676	40.1	1,831	20.0	348	20.7
2018	9,005	1,635	3,457	38.4	629	38.5	1,847	20.5	324	19.8
2019	8,844	1,568	3,366	38.1	612	39.0	1,699	19.2	298	19.0
2020	8,578	1,497	3,420	39.9	573	38.3	1,506	17.6	231	15.4

출처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2020년 경력단절여성이 일을 그만둔 사유로는 육아(42.5%), 결혼(27.5%), 임신·출산(21.3%), 가족돌봄(4.6%), 자녀교육(4.1%) 순인 바, 육아와 결혼이 70%를 차지하고 있음.

2) 비취업여성은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여성으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말함.
 3) 경력단절여성 : 15~54세의 기혼여성 중 현재 비취업인 여성으로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초등학교), 가족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

경력단절 사유별 현황(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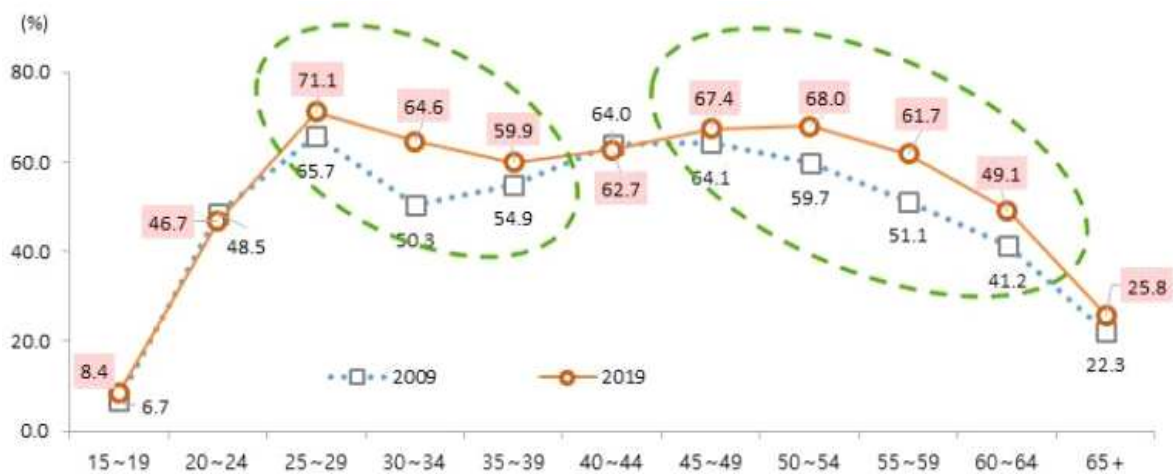
(단위 : 천명, %)

	2016		2017		2018		2019		2020	
	인원수	구성비	인원수	구성비	인원수	구성비	인원수	구성비	인원수	구성비
합계	1,924	100.0	1,831	100.0	1,847	100.0	1,699	100.0	1,506	100.0
육아	578	30.0	586	32.0	619	33.5	649	38.2	640	42.5
결혼	668	34.7	633	34.6	634	34.3	522	30.7	414	27.5
임신출산	505	26.2	454	24.8	445	24.1	384	22.6	321	21.3
가족돌봄	93	4.8	82	4.5	78	4.2	75	4.4	69	4.6
자녀교육	81	4.2	77	4.2	71	3.8	69	4.1	62	4.1

출처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여성의 고용률은 취업 후 결혼, 임신·출산, 육아 등 다양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었다가 재취업을 하면서 M자형의 특징을 보이는데, 노동시장에 재진입이 쉽지 않고 기존 경력에 비해 하향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경력단절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어, 경력단절 자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⁴⁾.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



출처 : 통계청,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4) 국미애·이화용(2017), 서울시 여성의 경력단절 경로 및 영향요인 분석,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이처럼 최근 5년간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차지하는 비중(27.5~34.7%)을 고려할 때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의에 ‘혼인’을 추가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며, 경력단절여성이 양질의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시책추진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계획을 구체화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의미있다고 사료됨.

3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그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조례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례의 입법취지 및 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영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633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8월 11일

발 의 자 : 김경영, 권수정, 김경우,
김제리, 김화숙, 박기재,
송재혁, 이병도, 이영실,
이정인, 조상호 의원(11명)

1. 제안이유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일부개정(2017.3.21.)되어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의에 “혼인”이 포함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연도별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행계획에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등의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의를 수정함(안 제2조제1호)
- 나. 연도별 시행계획에 시행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임신”를 “혼인·임신”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5조”를 “제4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현황과 전망
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주요 시책
3.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주요 시책
4.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시행결과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p> <p>2. ~ 4. (생략)</p> <p>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2조(정의) ----- -----.</p> <p>1. ----- <u>혼인·임신</u>----- ----- ----- -----.</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 ----- ----- <u>제4조</u>----- -----.</p> <p>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u>1. 경력단절여성등의 현황과 전망</u></p> <p><u>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주요 시책</u></p> <p><u>3.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주요 시책</u></p> <p><u>4. 그 밖에 시장이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u></p>

<신 설>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시행결과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